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1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태선·정준호·장철민

복기왕 • 한민수 • 김태년

윤종군 • 박홍배 • 이학영

김주영 • 윤준병 • 강득구

박해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 우에는 이를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교육감 의견 제 출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경찰 조사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(안 제24

조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4조(사법경찰관의	사건송치)	제24조(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)
(생 략)	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	음)
<u><신 설></u>		②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
		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
		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
		의로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
		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사건을
		<u>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	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
		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
		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지
		<u>하여야 한다.</u>